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작성일 : 2022. 7. 14.)



광진구
GWANGJIN-GU

차 례

I. 성과분석 개요	3
II. 성과분석 결과	9
1. 총 평	12
III. 지표별 성과분석	13
IV. 개별기금별 성과분석	23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25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
3. 중소기업육성기금	39
4. 자활기금	47
5. 노인복지기금	55
6. 양성평등기금	63
7. 재난관리기금	71
8. 옥외광고발전기금	79
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7
10. 도로굴착복구기금	93
11. 식품진흥기금	101
12. 광진구장학기금	109

1. 성과분석 개요

I

성과분석 개요

□ 큰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4조제1항(기금운용성과분석)

□ 대 상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등 12개 기금

□ 분석방법

- 2개 분야, 9개 지표(정량적 지표 7개, 가·감점 2개)에 대해 분석 시행

분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
	2. 사업비 집행률	20	↑
기금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의존율	15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
	6. 기금 수 현황	15	↓
	7. <u>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u> ※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2023년 시행)부터 적용 예정	-	↑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작성
	• 경상적 경비 비율	△2	↓

□ 분석지표 정비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적정성) 기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확화*한 바,
 -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2.4.18.)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이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상 명확하게 규정함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
 - ※ 관련 예규 개정 시점('22.4.) 등을 고려, '22회계연도 성과분석('23년 시행)부터 적용 예정

현 행	개 정						
<신 설>	<p>○ (지표)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p>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p>※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p> <p>※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 자료 확인 후 판단)</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7.5점</td> </tr> <tr> <td style="padding: 5px;"> <p>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p>※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7.5점</td> </tr> </tbody> </table> <p>○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각각 7.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text{자치단체 점수} = \left(\frac{\text{시스템 활용 기금 수}}{\text{기금 개수}(n\text{개})} \times 100 \right) \times \frac{7.5}{100}$ </div>	구 분	세부배점	<p>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p>※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p> <p>※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 자료 확인 후 판단)</p>	7.5점	<p>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p>※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p>	7.5점
구 분	세부배점						
<p>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p>※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p> <p>※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 자료 확인 후 판단)</p>	7.5점						
<p>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p> <p>※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p>	7.5점						

- (기금 수 현황) 법령에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기금 수 현황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 제외)

□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신설)

- 향후 동일 지표에 대해 3년 연속 개선 권고를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 강화**
 ※ '21회계연도 성과분석의 권고사항부터 적용, 미조치 사유 또는 설명자료 제출 가능

<참고 : 자치단체 제출 개선의견>

- ① (미회수채권 비율)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의 자활기금*은 미회수채권 비율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대상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미회수비율이 높은 편으로, 대부분 기초단체에 설치되어있으나 제주·세종의 경우 광역에 설치

※ 미회수채권 비율 : 제주 43.7%, 세종 68.0%, 그 외 광역단체 0.0~2.1%

⇒ (일부수용) '21회계연도 성과분석 시 미회수채권 비율 지표 삭제

- ② (기금 수 현황) 법령에서 별도의 계정(특별회계, 기금 등)을 두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평가대상 제외

※ (현행)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수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평가대상에서 제외

II. 성과분석 결과

II

성과분석 결과

지표별 분석결과

기금명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 운용의 건전성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비율 (%)	위원회 운영성 위탁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분석결과	22.86	46.59	92.50	30.07	12.51	7
공공용 및 공공의 청사 시설건립기금	19.55	45.53	90.00	평가제외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평가제외	평가제외	8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중소기업 육성기금	75.41	40.84	90.00	36.62	○	○
자활기금	6.32	63.41	10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노인복지 기금	1.63	8.33	100.00	0.00	○	○
양성평등 기금	1.91	100.00	90.00	0.00	○	○
환경미화 자원기금	13.84	35.00	100.00	0.00	○	○
옥외광고 기금	21.67	32.69	10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재난관리 기금	평가제외	평가제외	9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도복구축 기금	37.19	94.86	100.00	0.00	○	○
식품진흥 기금	67.47	17.35	9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광장진흥 기금	1.98	98.86	80.00	0.00	○	○

- ※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 평가제외 : 2개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타회계 의존율 평가제외 : 6개 (법정의무기금(4개),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평가제외 : 5개 (법정의무기금(4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기금정비 기금 수 평가제외 : 5개 (법정의무기금(4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 성과분석 종합결과

- 광진구는 2개 분야 8개*의 지표에서
 - *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2023년부터 적용 예정(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시)
 - 사업비 편성비율 22.68%, 사업비 집행률 46.5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2.50%, 타회계 의존율 30.0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2.51%, 기금 수 현황 7개, 경상적 경비 비율 0%라는 결과값을 기록하였음.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편성비율과 사업비 집행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2020회계연도 대비 동일·개선된 결과를 보였고, 특히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은 전년(66.69%) 대비 36.62%p 개선되었음.
- 기금 조성액 비율 역시 전년(12.95%) 대비 결과값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0%로 바람직한 지표를 유지 중임.
- 다만 사업비 편성비율과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22.86%, 46.59%를 기록하여 전년(각 24.57%, 66.77%) 대비 지표상태가 저하되었음. 사업비 편성비율의 경우 계획상 지출액과 사업비 편성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분모값인 계획상 지출액이 더 작은 비율로 감소하여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용자사업 수요 감소, 지원기관의 휴관 등 2020회계연도 대비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표값이 악화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의 경우 92.50%로 전년(93.64%) 대비 경미하게 감소 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하반기 설치되어 2021회계연도 성과분석부터 평가대상 기금으로 추가된 점을 감안했을 때 모든 위원회가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됨.
-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우리구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청사건립기금이 주요 지표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임.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다소 저조하였으나 공사가 본격 진행되면 대폭 개선될 여지가 있음. 추가적인 기금 조성 과정에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당분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우리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음.

Ⅲ. 지표별 성과분석

III

지표별 성과분석

□ 사업비 편성 비율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높을수록 바람직)																																																												
기 준	<p>○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p> $\text{사업비 편성 비율} = \frac{\text{사업비 편성액}}{\text{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times 100(\%)$ <p>※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p>																																																												
내 역	(단위 : 백만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치단체</th> <th>기금명</th> <th>사업비 편성액 (A)</th> <th>계획상 지출액 (B)</th> <th>사업비 편성률 (A/B×100)</th> </tr> </thead> <tbody> <tr> <td></td> <td>평 균</td> <td>27,160</td> <td>118,835</td> <td>22.86</td> </tr> <tr> <td></td> <td>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 사 · 시 설 건 립 기 금</td> <td>19,342</td> <td>98,917</td> <td>19.55</td> </tr> <tr> <td></td> <td>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td> <td>5,715</td> <td>7,579</td> <td>75.41</td> </tr> <tr> <td></td> <td>자 활 기 금</td> <td>82</td> <td>1,297</td> <td>6.32</td> </tr> <tr> <td></td> <td>노 인 복 지 기 금</td> <td>12</td> <td>735</td> <td>1.63</td> </tr> <tr> <td>광진구</td> <td>양 성 평 등 기 금</td> <td>10</td> <td>524</td> <td>1.91</td> </tr> <tr> <td></td> <td>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기 대 여 기 금</td> <td>80</td> <td>578</td> <td>13.84</td> </tr> <tr> <td></td> <td>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td> <td>156</td> <td>720</td> <td>21.67</td> </tr> <tr> <td></td> <td>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td> <td>1,283</td> <td>3,450</td> <td>37.19</td> </tr> <tr> <td></td> <td>식 품 진 흥 기 금</td> <td>392</td> <td>581</td> <td>67.47</td> </tr> <tr> <td></td> <td>광 진 구 장 학 기 금</td> <td>88</td> <td>4,454</td> <td>1.98</td> </tr> </tbody> </table>	자치단체	기금명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평 균	27,160	118,835	22.86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 사 · 시 설 건 립 기 금	19,342	98,917	19.5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5,715	7,579	75.41		자 활 기 금	82	1,297	6.32		노 인 복 지 기 금	12	735	1.63	광진구	양 성 평 등 기 금	10	524	1.91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기 대 여 기 금	80	578	13.84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56	720	21.67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283	3,450	37.19		식 품 진 흥 기 금	392	581	67.47		광 진 구 장 학 기 금	88	4,454	1.98
	자치단체	기금명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평 균	27,160	118,835	22.86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 사 · 시 설 건 립 기 금	19,342	98,917	19.5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5,715	7,579	75.41																																																								
		자 활 기 금	82	1,297	6.32																																																								
		노 인 복 지 기 금	12	735	1.63																																																								
	광진구	양 성 평 등 기 금	10	524	1.91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기 대 여 기 금	80	578	13.84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56	720	21.67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283	3,450	37.19																																																								
	식 품 진 흥 기 금	392	581	67.47																																																									
	광 진 구 장 학 기 금	88	4,454	1.98																																																									
결 과	<p>○ 우리구 사업비 편성비율 평균은 22.86%이며, 2020회계연도 대비 계획상 지출액 감소율이 사업비 편성액 감소율보다 작아 사업비 편성률 역시 전년(24.57%) 대비 1.71% 감소하였음.</p> <p>○ 신청사 건립 비용이 포함된 청사·시설건립기금이 전체 기금 중 가장 높은 지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의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 편성비율 지표는 향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p>																																																												

□ 사업비 집행률

구 분	설 명				
개 요	○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높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text{사업비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지출액}}{\text{사업비 편성액}} \times 100(\%)$ <p>※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p> <p>※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p> <p>※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p>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광진구	평 균	12,655	27,160	46.59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 사 · 시 설 건 립 기 금	8,807	19,342	45.5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334	5,715	40.84
		자 활 기 금	52	82	63.41
		노 인 복 지 기 금	1	12	8.33
		양 성 평 등 기 금	10	10	10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기 금 대 여 기 금	28	80	35.00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51	156	32.69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217	1,283	94.86
		식 품 진 흥 기 금	68	392	17.35
광 진 구 장 학 기 금		87	88	98.86	
결 과	<p>○ 사업비 집행률 평균은 46.59%로 전년(66.77%) 대비 20.18%p 감소하였음.</p> <p>○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완공 및 신청사 건립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액 감소로 집행률도 감소 되었으며, 신청사 건립 진척도에 따라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p> <p>○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용자수요 감소로 사업비 지출이 감소, 전년(각 81.79%, 57.89%)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감소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기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액 용자사업에 주력, 추가 출연금 지출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대상 고액 용자 사업 추진시기 보류 및 고액용자 수요 감소 - 식품진흥기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용자 수요 감소 <p>○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만 사업 추진하여 전년(각 20%, 97.44%) 대비 사업비 집행률 감소</p>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높을수록 바람직)																																																																																							
기 준	<p>○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p> </div> <p>⇒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p> <p>※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p> <p>※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p> <p>※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p> <p>※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p> <p>※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 %)</p>																																																																																							
내 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자치단체</th> <th>기금명</th> <th>①번</th> <th>②번</th> <th>③번</th> <th>④번</th> <th>지표평균</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 균</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92.50</td> </tr> <tr> <td rowspan="1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진구</td> <td>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건립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통합재정안정화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r> <td>중소기업육성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자 활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노 인 복 지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양 성 평 등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옥외광고발전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재 난 관 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식 품 진 흥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광진구장학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N</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body> </table>	자치단체	기금명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평균		평 균					92.50	광진구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건립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N	80	중소기업육성기금	N	Y	Y	Y	90	자 활 기 금	Y	Y	Y	Y	100	노 인 복 지 기 금	Y	Y	Y	Y	100	양 성 평 등 기 금	N	Y	Y	Y	9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 난 관 리 기 금	N	Y	Y	Y	9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Y	Y	Y	Y	100	식 품 진 흥 기 금	N	Y	Y	Y	90	광진구장학기금	N	Y	Y	N	80
	자치단체	기금명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평균																																																																																	
		평 균					92.50																																																																																	
	광진구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건립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N	80																																																																																	
		중소기업육성기금	N	Y	Y	Y	90																																																																																	
		자 활 기 금	Y	Y	Y	Y	100																																																																																	
		노 인 복 지 기 금	Y	Y	Y	Y	100																																																																																	
		양 성 평 등 기 금	N	Y	Y	Y	9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 난 관 리 기 금	N	Y	Y	Y	9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Y	Y	Y	Y	100																																																																																	
식 품 진 흥 기 금		N	Y	Y	Y	90																																																																																		
광진구장학기금		N	Y	Y	N	80																																																																																		
결 과	<p>○ 우리구 12개 기금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이 1/3 이상으로, 모든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 중</p> <p>○ 앞으로도 적절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높이고, 회의 소집 시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기 준	<p>○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타회계 의존율} = \frac{\text{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text{기금수입결산 총액}} \times 100(\%)$ </div> <p>※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p> <p>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p> <p>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p>																																			
내 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자치단체</th> <th style="width: 20%;">기금명</th> <th style="width: 15%;">타회계 전입금 (A)</th> <th style="width: 15%;">기금 수입결산 총액 (B)</th> <th style="width: 35%;">타회계 의존율 (A/B×100)</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 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2,094</td> <td style="text-align: center;">6,964</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7</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진구</td> <td>중소기업육성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94</td> <td style="text-align: center;">5,718</td> <td style="text-align: center;">36.62</td> </tr> <tr> <td>노 인 복 지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양 성 평 등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3</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5</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광 진 구 장 학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66</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body> </table>	자치단체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평 균	2,094	6,964	30.07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094	5,718	36.62	노 인 복 지 기 금	0	10	0.00	양 성 평 등 기 금	0	12	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0	53	0.0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0	1,105	0.0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0	66	0.00
자치단체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평 균	2,094	6,964	30.07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094	5,718	36.62																																
	노 인 복 지 기 금	0	10	0.00																																
	양 성 평 등 기 금	0	12	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0	53	0.0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0	1,105	0.0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0	66	0.00																																
결 과	<p>○ 우리구 타 회계 의존율은 30.07%로, 전년(66.69%) 대비 36.62%p 감소 하였음.</p> <p>○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용자 지원을 위해 전입금 2,09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추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타 회계 의존율은 다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p>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구 분	설 명							
개 요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text{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frac{\text{기금총액(조성액)}}{\text{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times 100(\%)$ <p>※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1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p>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광진구	854,141	168,139	5,365	0	55,910	106,864	12.51
결 과	<p>○ 우리구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12.51%로 2020회계연도 구(서울)-II 그룹 평균 6.0% 대비 6.51%p 높음.</p> <p>○ 우리구의 지표값이 높은 것은 신청사 건립 추진, 노후화된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추정됨.</p> <p>○ 2020회계연도 대비하여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감소하고, 모든 기금 총액은 증가하였음. 다만 법정의무기금총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크게 증가하여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감소함.</p> <p>○ 신청사의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당분간 큰 폭의 비율 개선은 어려우나, 완공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p>							

□ 기금 수 현황

구 분	설 명						
개 요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적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영 중인 기금 수: <u>2021년</u>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u>통합재정안정화기금</u>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u>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u> 제외)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 의무기금 수 (B)	감채기금 수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광진구	12	4	0	1	0	7
결 과	○ 법정의무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에 대한 기금 수로, 우리 구는 2020회계연도 구(서울)-II 그룹 평균 8.5개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기초 자치단체 평균인 4.7개보다는 2.3개 더 많은 수치임. ○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은 일몰기간 도래 시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기타 지표(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서울시 광진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여부	조치 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10% 미만인 지자체는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검토	해당 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 24.57%
사업비 집행률	○ 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는 기금의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해당 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평균 사업비 집행률 66.7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기금 설치 및 운용 권고	해당 사항 없음	X	○ 2020. 9.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개정하여 운용 근거 마련 및 설치 완료
미회수 채권비율	○ 미수채권 비율이 50% 이상인 기금 관리 필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O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군입대, 해외연수, 휴학 등으로 졸업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채권 비율이 높음
위원회의 운영 적정성	○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광진구장학기금	X	○ 모든 기금별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1/3 이상 참여하여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전체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구장학기금	X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입금 편성 ○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은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회계 통합하거나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평균이상인 경우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분석대상 기금 총액비율이 12.95% ※ 동종단체 평균 6.0%	O	○ 신청사의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완공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기금 수 현 상 황	○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 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해당 사항 없음 ※ 동종단체 평균 8개	X	○ 2020회계연도 기금 수 7개
경상적 경비비율	○ 불필요한 경비 삭감	해당 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경상적 경비비율 0%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결산서 작성	○ 서류 작성 제출 협조 요청	해당 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서류 제출 완료

○ 경상적 경비 비율

구분	설명																																																																						
개요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기준	<p>○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경상적 경비 비율} = \frac{\text{경상적 경비}}{\text{기금 총 지출액}} \times 100(\%)$ </div> <p>※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p> <p>※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p> <p>※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p>																																																																						
내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자치단체</th> <th style="width: 25%;">기금명</th> <th style="width: 15%;">경상적 경비 (A)</th> <th style="width: 15%;">기금 총 지출액 (B)</th> <th style="width: 30%;">경상적 경비 비율 (A/B×100)</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 균</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347</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건립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440</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통합재정안정화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중소기업육성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2,334</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자 활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노 인 복 지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광진구</td> <td>양 성 평 등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옥외광고발전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1</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재 난 관 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59</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17</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식 품 진 흥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68</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r> <td></td> <td>광 진 구 장 학 기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87</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td> </tr> </tbody> </table>	자치단체	기금명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평 균	0	18,347	0.00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건립기금	0	13,44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334	0.00		자 활 기 금	0	52	0.00		노 인 복 지 기 금	0	1	0.00	광진구	양 성 평 등 기 금	0	10	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0	2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51	0.00		재 난 관 리 기 금	0	1,059	0.0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0	1,217	0.00		식 품 진 흥 기 금	0	68	0.0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0	87	0.00
자치단체	기금명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평 균	0	18,347	0.00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건립기금	0	13,44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334	0.00																																																																			
	자 활 기 금	0	52	0.00																																																																			
	노 인 복 지 기 금	0	1	0.00																																																																			
광진구	양 성 평 등 기 금	0	10	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0	2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51	0.00																																																																			
	재 난 관 리 기 금	0	1,059	0.0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0	1,217	0.00																																																																			
	식 품 진 흥 기 금	0	68	0.0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0	87	0.00																																																																			
결과	<p>○ 2021회계연도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없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지출구조임.</p> <p>○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기금 총 지출액 전액이 재무활동에 해당하여 지출액 '0'으로 반영됨.</p> <p>○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경상적 경비 편성을 지속 지양</p>																																																																						

IV. 개별기금별 성과분석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총 무 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총무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5조
- 목적: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설치연도: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294	3,263	13,440	△10,177	90,116	4,041	30,135	△26,094	

II. 분석결과

1. 총 평

- 추가경정예산, 특별교부금 및 이월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통하여 건립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1년까지 총90,116백만원을 조성함.
- 향후,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재원(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다년간에 걸쳐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278	22,155	44%	35,026	13,440	38%

※ 사고이월액 : ('20년 → '21년) 4,633백만원 / ('21년 → '22년) 8,476백만원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신청사 건립(22,600)	○ 조성원가 검증용역 및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29)	0.12%
	○ 동 청사 건립(21,713)	○ 동 청사 건립(2,200) - 구의1동청사건립(19) - 구의2동청사 건립(359) - 군자동청사 건립(1,822) (20→21년 사고이월액: 4,576)	10% (31%)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5,965)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19,927) (20→21년 사고이월액: 57)	334% (335%)
	○ 기타회계 전입금(0)	○ 전입금(10,992) - 신청사 추경(6,068) - 동청사(4,924) · 군자동 특별교부금(1,827) · 가족센터 건립 보조금(3,097)	-
'21년	○ 신청사 건립(19,600)	○ 신청사 계약금 (7,239)	37%
	○ 동 청사 건립(15,426)	○ 동 청사 건립 (5,956) - 군자동청사 건립(3,872) - 구의2동청사 건립(2,084) (21→22년 사고이월액: 8,476)	39% (94%)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 작업장 바닥보강 등(245)	-
	○ 기타회계 전입금(0)	○ 적립금(2,013) - 구의2동 특별교부금(2,013)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재원 안정적 확보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부지매입비 포함) ○ 건립 관련 부대경비 ○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간 시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적립을 통해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없 음	
	'19년	없 음	
	'20년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청사시설의 효율적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기금 설치 목적 변경은 불필요하다 판단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신청사 건립	75,735 사업비: 19,600 예치금: 56,135	신청사 건립비는 총102,700백만원 재원이 필요한 사업(예정)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다년간 기금적립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상
②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18,005 사업비: 10,538 예치금: 7,467	동청사 건립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년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음	상
합 계	93,74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요 재원조달 수단: 예치금 회수, 전입금 및 이자수입

구 분	성 격	규모(%)
예 치 금	예치금 회수	97
전 입 금	기타회계 전입금	2
이자수입	기금운용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1

- 재원조달의 대부분은 예치금 회수로 이루어지며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를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이 회수되고 있음.
- 전입금은 추경,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이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시비, 구비 등 교부받음.
- 2021년도 이자수입이 1,246,605천원 발생하였으며 최근 3개년도 이자수입 추세로 볼 때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적립의 적정성은 대체로 건전한 상태라 판단됨.
- 현행대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을 통한 기금을 운용함이 적합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신청사 조기 건립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마련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이월액 포함)	118,125 (132,080)	%	117,447 (122,449)	%	98,923 (103,556)	%
	전입금	29,296	22	10,992	9	2,013	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6,870	66	98,629	81	95,660	92
	예수금						
	이자수입	1,841	1	1,816	1	1,247	1
	기타수입	117	-	10	-	3	-
	전년도이월액	13,955	11	11,002	9	4,633	5
지 출	합 계 (이월액 포함)	121,078 (132,080)	%	117,815 (122,449)	%	95,080 (103,556)	%
	비용자성사업비	22,449	17	22,155	18	13,440	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8,629	75	95,660	78	81,640	7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연도이월액	11,002	8	4,633	4	8,476	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기획예산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의2
- 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512	25,398	7,000	18,398	55,910	677	31,000	30,323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을 통해 2021년까지 총 55,910백만원을 조성함.
-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자원 추가 확보 및 정기에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자원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 향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7,000	7,0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기타회계 전입금 (37,512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0%
'21년	○ 기타회계 전출금 (7,000백만원)	○ 일반회계 전출금 ○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0%
	○ 기타회계 전입금 (25,000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의2	○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 하여 재정을 건전 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다른 회계로의 전출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다른 회계로의 전출	31,000	○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 적립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	
타 기금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요 재원 조달 수단 :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구분	성격	규모(%)
전 입 금	기타회계 전입금	39.74
예 치 금	예치금 회수	59.63
이자수입	기금운용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0.6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여유자금 확보 및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재원이므로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 재원 증대 노력 및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0 / 0 %	37,512 / 100%	62,910 / 100%
	전입금		37,512 / 100%	25,000 / 39.7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512 / 59.63%
	예수금			
	이자수입			398 / 0.6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0 / 0%	37,512 / 100%	62,910 / 100%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7,512 / 100%	55,910 / 88.8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7,000 / 11.1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3.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지역경제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97	5,718	2,334	3,384	7,881	3,408	6,680	△3,27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 사업에 집중**
 -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구 - 시중은행 연계출연으로 37억원 출연
- ‘광진형 특별융자’에 주력하느라 **고액 융자 중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보류(출연금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액 융자수요 감소로 기금 융자 저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융자 등 단순 융자성사업 뿐만 아니라 **출연 및 특례지원 등 비융자성사업을 확대, 강화 운용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최대규모의 특별보증 **융자규모(604억)**를 조성하는 등
 - **총 2,342개 업체에 518억원의 융자 지원,**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이자·보증수수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50	9,120	299.0	3,620	2,334	65.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8,00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6,553백만원)	62.8%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50백만원)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50백만원)	100%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2,0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2,000백만원)	100%
'21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3,00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265백만원)	100%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50백만원)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50백만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6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60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일명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 지원사업에 주력
- '광진형 특별융자'(소액 융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출연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중 융자성사업비 운용을 보류, 하반기부터 추진한 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고액 융자) 수요가 저조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 도모	

- 융자 및 상환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융자사업의 특성상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특정감사
	'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 결과 보고 부적정	종합감사
	'21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3,000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	상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사업	2,000백만원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	상
③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1,680백만원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상
합 계	6,68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용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 재원의 성격과 규모
 - 용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회수한 원금과 0.7%(현재)의 이자수입 기금수입의 주요 재원임
 - 현행대로 용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환원 방식으로 운용함이 적합함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094백만원 전입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다수의 업체를 지원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낮은 금리의 기금 용자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기금을 존치해야 함
-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용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558	%	13,616	%	10,215	%
	전입금	-	-	8,100	59.5	2,094	20.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27	59.9	2,468	18.1	3,551	34.7
	예치금회수	1,784	39.1	3,003	22.1	4,497	44.0
	이자수입	46	1.0	45	0.3	73	0.7
지 출	합 계	4,558	%	13,616	%	10,215	%
	비용자성사업비	50	1.1	2,567	18.9	2,069	20.2
	융자성사업비	1,505	33.0	6,553	48.1	265	2.5
	예치금	3,003	65.9	4,496	33.0	7,881	77.1

4. 자활기금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어르신복지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04.12.10.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설치로 설치근거 마련
- 2009 : 일반회계 200,000천원 기금 출연
- 2011.11.1. :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268	34	52	1,250	35	154	△68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광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1명, 방역관리사 자격 취득 15명에 대하여 2,45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단별 참여자들에게 공동체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협동심과 소속감, 유대감을 증진하고 업무 및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여 건강한 근로를 도모하고자 교육비로 1,93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32,000천원 등 총 36,382천원을 지원함.
- 2021년 자활기금 집행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자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행정 업무 및 영업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를 채용·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궁극적인 자립·자활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7	57	100%	82	52	63%

※ 서울시 자활기금 점포임대 보증금(더나눔커피) 기간 만료에 따른 광진구 자활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 자활기금 1년 연장으로 미사용 (30,000천원)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9.7백만원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 장비 교체 :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9.7백만원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 장비 교체 지원 : 5백만원 	100%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10백만원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점포임대 보증금 용자 지원 (더나눔커피) :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10백만원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6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자활참여자 전문자격증(대형운전면허, 방역관리사) 취득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8조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충당	-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대출 - 자활기업 사업자금 이차보전 - 자활사업비 지원 등	100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조성 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액(2021. 12월말 현재) : 1,250백만원 (융자채권 600백만원 미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결산 및 운용보고서에 대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음	-결산:2.21심의조치완료 -운용:5.22심의 조치완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준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준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준치필요	상
② 자활기업 등 전세점포 임대지원	100백만원	"	"
③ 자활사업비 지원	54백만원	"	"
④ 자활기업 사업자금 이차보전 등	-	"	"
합 계	15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달성되었으며, 향후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 매출금 등의 자활 기금 전입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관리로 재원조성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 2021년 기금 지출은 자활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52백만원, 수입은 매출적립금 19백만원을 포함한 34백만원으로 재원의 감소 없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활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타 자치구들도 자활기금의 사용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통해서라도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 필요.
-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315	%	1,325	%	1,30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51	4	1	1	0.9	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09	92	1,241	93	1,268	97
	예수금						
	이자수입	26	2	83	6	14	1
	기타수입	29	2			19	1
지 출	합 계	1,315	%	1,325	%	1,302	%
	비용자성사업비	54	4	57	4	52	4
	용자성사업비	20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41	94	1,268	96	1,250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어르신복지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목적 :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 설치연도 : 1996년
- 최초 기금조성액 : 700,000천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7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0	9.6	0.6	9	729	12	10.2	1.8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어르신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인교실 10개소에 12,000천원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1,2,3분기 노인교실 휴관으로 집행실적 600천원으로 계획대비 집행율(4.9%)로 집행실적 저조
- 기금의 재원은 초기 출연금 7억원과 출연금의 이자수입, 제휴카드 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1년 이자수입 7,775천원, 제휴카드 전입금 130천원으로 적립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건전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낮아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원조성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적립으로 기금조성의 확대 또는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편입 등 검토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6	3	20.5	12.1	0.6	4.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21년도 기금사업으로 노인교실 10개소의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여 목표 대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노인교실 휴관으로 1,2,3분기 사업비 미집행으로 집행실적 감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노인교실(12개소) : 14.6백만원	○ 노인교실(10개소) : 3백만원	20.5%
'21년	○ 노인교실(10개소) : 12.1백만원	○ 노인교실(8개소) : 0.6백만원	4.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조례 제17조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도육성 -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노인교실의 건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을 위한 목적에 적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부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12백만원	- 어르신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존치 필요	상
합 계	1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1년도 기금은 초기의 적립금 7억원을 국민은행에 1억씩 7개 계좌에 1년만기 정기예금(상반기, 이자지급 매월) 및 공공예금(하반기, 이자지급 1월, 7월)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 연 7,775천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진비씨카드 사용 적립금이 연 130천원 발생하여 기금 적립의 적정성은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건전한 상태임.
- 적립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건전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낮아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적립으로 기금조성의 확대 또는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편입 등 검토 필요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고자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반회계 적립금을 확대하거나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 중임.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교실 지원 등 안정적 대응을 위하여 존치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22	%	723	%	73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06	97.9	709	97.9	720	98.6
	예수금						
	이자수입	16	2.2	14	2.2	8	1.1
	기타수입	0.1	0.1	0.1	0.1	2	0.3
지 출	합 계	722	%	723	%	730	%
	비용자성사업비	13	1.9	3	1.9	1	0.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09	98.1	720	98.1	729	9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양성평등기금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가정복지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05년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	'21년 운용액			'21년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16,707	11,633	10,000	1,633	518,341	10,448	11,000	△552	

- 양성평등기금은 '05년부터 출연금 400백만원 및 이자수익으로 조성 되어, '15년 이전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사용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 심의회에서 목표액(500백만원) 조성 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 '17년도 말 502백만원을 달성하여 '18년부터 양성 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함

II. 분석결과

1. 총 평

- '21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결과, 6개 단체(기관) 공모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3개 단체(기관) 선정되어 보조금 10백만원 교부 완료
- 지원현황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신청 단체 및 법인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사업내용
소 계			10,000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신재원)	“손주육아나눔터- 실버맘&대디”	4,000	-양성평등교육 -손자녀 양육교실
2	해오름 사회적협동조합 (김현주)	“아빠와 함께 스마트 드론교실”	3,000	-부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드론 체험 -놀이 코딩을 통한 드론 배우기
3	광진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명자)	“독거독락(獨居獨樂) :혼자서도 살거야”	3,000	-1인가구 여성 대상 경제· 주거·건강 주제 프로그램 제공 및 자립능력 강화

2.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0	10,000	100%	10,000	10,000	100%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 10,000천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3개 단체(기관) 공모사업 선정 10,000천원 지출 완료	100%
'21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 10,000천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3개 단체(기관) 공모사업 선정 10,000천원 지출 완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광진구 양평평등기본조례 제33조	남녀평등추진과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여성권익증진 사업 - 여성단체 육성 및 사회참여활성화 - 여성복지 증진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20년	없음	
	'21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촉진 여성안전사업 여성사회참여 지원 등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24. 4. 17.까지 존치결정 -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사업외의 양성 평등 촉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 -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공모를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	
타 기금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재원의 성격 : 구 출연금 및 이자수익
 - 재원의 규모 : 518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원사업 및 지원단체 모집 다양화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해 다각적 홍보방법 필요.
-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구 출연금의 지원까지도 검토해볼 필요성 있음. 끝.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23	%	526.7	%	528.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11.4	97.8	516.5	98	516.7	97.8
	예수금						
	이자수입	11.6	2.2	10.2	2	5.6	1.1
	기타수입					6	1.1
지 출	합 계	523	%	526.7	%	528.3	%
	비용자성사업비	6.5	1.2	10	1.9	10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16.5	98.8	516.7	98.1	518.3	9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7. 재난관리기금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도시안전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10. 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07호)
- 1999. 03. 2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23호)
- 2002. 12. 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정(통합 조례)(조례 제338호)
- 2005. 04. 15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부칙(조례 제401호)
- 2011. 09. 09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 제4항개정(조례 제734호)
- 2020. 09. 10.: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개정(조례 제111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10	2,038	1,059	980	2,889	1,744	1,592	15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기금으로,
-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됨
- 2021년에는 1,059백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1,019백만원)에 비해 40백만원 증가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용으로 200백만원,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78백만원,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비용으로 48백만원, 빗물펌프장 정밀점검용역으로 25백만원을 집행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음.
- 코로나19예방 및 방역물품구매 등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한 비용 305만원, 공공운영비 26백만원, 폭염대비 그늘막 및 한파쉼터 72백만원, 재해응급복구비용 및 활동보상을 위한 비용 55백만원 등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안전한광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81	1,019	104%	1,655	1,059	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39백만원 ○ 공공운영비 4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역 수위계설치 30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85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62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 150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100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08백만원 ○ 공공운영비 31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61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역 수위계설치 19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74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54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 99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15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5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20백만원 	104%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백만원 ○ 사무관리비 653백만원 ○ 공공운영비 125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73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29백만원 ○ 폭염, 한파 대응 150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100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백만원 ○ 사무관리비 225백만원 ○ 공공운영비 26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78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48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25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 72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80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3백만원 	6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백만원)
코로나19 대응을위한 기간제 임금 및보험료 지급 - 재택치료 업무지원, 자가격리 업무지원, 확진자 심층조사 업무지원 요원 등
사무관리비 (225백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물품 구매,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 물품지원,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구매 등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예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입차료, 가스폭발 사고관련 긴급대응 등
공공운영비(26백만원)
재난예방차량 운행, 080 간편전화 체크인서비스 등에 따른 운영비 지출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200백만원)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에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을 지원하여 불시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준설(258백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에 필요한 장비 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여 침수 예방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48백만원)
우리 구 관내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25백만원)
우리 구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72백만원)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제공하고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예방함
재해응급 복구비(80백만원)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상황 대응 및 복구 조치 - 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103백만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응급복구 및 지원금 지급 - 안심숙소 지원, 코로나19 방역소독활동비 지급 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6조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안정적 확보	○ 지하주택침수방지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유지 준설 ○ 재해응급복구비 ○ 폭염그늘막·한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없음	
	'20년	해당사항없음	
	'21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인건비	200백만원	○ 긴급재난대응 기간제근로자보수	상
② 사무관리비	438백만원	○ 감염병 및 폭염 등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매, 훈련 등에 필요	상
③ 공공운영비	5백만원	○ 재난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	상
④ 지하주택 침수방지	200백만원	○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 지출이 필요	상
⑤ 풍수해 재난예방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50백만원	○ 중곡 등 5개소 펌프장 유지에 필요한 장비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지출이 필요	상
⑥ 폭염, 한파 등 재난예방	100백만원	○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사업 운영에 필요 ○ 겨울철 한파 재난상황대비	상
⑦ 재해응급 복구비	200백만원	○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비용	상
⑧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300백만원	○ 재난피해자 및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
⑨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백만원	○ 재난상황에 따른 방역물품 구매	상
합계	1,593백만원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보통세 최근 3년 수입결산액의 평균 1% 적립) 의무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함
- 재원조달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매년 의무적립 기준액을 일반회계에 편성·적립함에 재원조달의 안정성은 우수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매년 집행되는 일상적 사업비가 아닌 실제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 상위법(『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검토 및 집행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388	%	2,929	%	3,948	%
	전입금	730	30.56	1,275	43.5	2,000	50.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21	67.88	1,616	55.2	1,910	48.4
	예수금						
	이자수입	36	1.5	38	1.3	38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388	%	2,929	%	3,948	%
	비용자성사업비	772	32.3	1,019	34.8	1,038	26.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1	0.5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16	67.6	1,910	65.2	2,889	73.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8. 옥외광고발전기금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가로경관과)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시기: 2014. 8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97	32	51	△19	578	71	80	△9	

II. 분석 결과

1. 총 평

-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인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2021년에는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수입 7,450천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 17,702천원, 이자수입 7,666천원 등 총 32,818천원의 수입이 재원으로 조성되었음.
- 조성된 기금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광고미게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사용되었음.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수거보상제 참여자 27명을 투입하여, 현수막 3,778매(일반형 2,356매, 족자형 1,422매), 벽보 854,360매, 명함 524,050매 등 총 1,382,188매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수거보상금 등으로 26,633천원을 지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광고미게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행정 안전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예산지원으로 시행된 1회성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광고주 모집 및 예산 집행을 실시함. 광진구에서는 2명의 광고주(홀리마켓, 육그램)를 모집하여 21년 1월~4월 중 게시된 광고비 24,300천원의 예산을 지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6	152	97.4	156	51	32.6

-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 및 민원 신고의 감소를 감안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2021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2020년도에 비해 2021년 사업비 집행 실적이 감소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0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6백만원, 15명 선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2백만원, 15명 선발)	97.4%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6백만원, 15명 선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6백만원, 27명 선발)	32.6%
	-	광고미게침 옥외광고물 활용 광고지원사업 (24백만원, 광고주 2명)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간·지선면을 비롯한 관내 불법 현수막이 감소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됨
-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제26조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간판개선 정비사업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을 통해 휴일 및 야간에도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주요 사거리 및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감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감 사 지 적 사 항	'19년	2018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2019. 7. 10. 조치완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합 계	80,880천원		
주민과 함께하는 유동 광고물 정비	80,880천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상 중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불법 현수막 잔재물 정비	13,000천원	19년도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 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해당 기금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

《 기금 재원 성격 및 규모 》

(단위 : 원)

재원의 성격	규모	비고
합 계	630,184,870	
이자 수입	7,666,392	
기타수입	증지수입	17,301,990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이행강제금	2,850,000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
	과태료	4,600,000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
	기타수수료	400,000 LED 전자게시대 수수료
예치금 회수	597,366,488	

6. 향후 계획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게시를 억제하고 기금 재원확보
-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38	%	749	%	630	%
	전 입 금						
	보 조 금						
	차 입 금						
	용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합)						
	예탁금원금회수						
	예 치 금 회 수	677	91.8	648	86.5	597	94.7
	예 수 금						
	이 자 수 입	13	1.8	13	1.7	8	1.3
	기 타 수 입	47	6.4	88	11.8	25	4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지 출	합 계	738	%	749	%	630	%
	비용자성사업비	89	12	152	20	51	8
	용자성사업비						
	인 력 운 영 비						
	기 본 경 비						
	예 탁 금						
	예 치 금	648	88	597	80	579	92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 타 지 출						

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환 경 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청소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1995년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0	52.5	27.7	24.8	555	70.7	80.0	△9.3	

II. 분석결과

1. 총 평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중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기금으로 재원은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함
- 2021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명에게 27,700천원(상반기 5명 16,700천원, 하반기 3명 11,00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2021년도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은 학자금 상환금 46,279천원과 이자 수입 6,261천원으로 총 52,540천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29	36	80	28	3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후생복지 향상
-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능력 향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학자금 대여사업(80백만원, 20명)	○ 학자금 대여사업(29백만원, 11명)	36%
'21년	○ 학자금 대여사업(80백만원, 20명)	○ 학자금 대여사업(28백만원, 8명)	3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근로능력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2조	광진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달 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직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학자금대여 사업	80백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2021년도 예치금: 530,375천원
- 학자금대여 상환금: 46,279천원
- 이자 수입금: 6,261천원

○ '19년도 ~ '21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36	%	559	%	582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4	7	49	9	46	8
	예치금회수	492	91	501	89	530	91
	이자수입	10	2	9	2	6	1
지 출	합 계	536	%	559	%	582	%
	융자성사업비	35	7	29	5	27	5
	예치금	501	93	530	95	555	9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학자금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되도록 기금 유지

10. 도로굴착복구기금

도 로 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도로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05.31 : 광진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 2002.12.20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정
- 2003.01.01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0.10.16 :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21.02.18 ~ 2021.12.23 : 2021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시행
- 2021.10.22 ~ 2021.12.24 : 군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행
- 2021.12.17 :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1,211,520천원→1,283,109천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38	1,105	1,217	▽112	2,726	1,550	1,211	△339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인해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1,283백만원) 대비 집행실적(1,217백만원) 비율은 94.85%임.
- 기금의 운용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수입 증가를 위해 단기 정기적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으로 36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현재 기금으로 추진 중인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유관기관 및 주민의 도로 굴착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연도별 사업규모가 결정되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복구물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구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집행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집행 비율
1,211	1,203	99.33%	1,283	1,217	94.8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도로굴착복구사업 (1,211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사업 (1,203백만원)	99.33%
'21년	○ 도로굴착복구사업 (1,283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사업 (1,217백만원)	94.8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효과 : 신속한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추진 내용
 - 도로굴착공사 복구 : 면적 9.04a
 - 노후도로 정비 : 면적 125.26a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도로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도로굴착공사 시행도로 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 도로굴착공사장 점검 및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운영 - 도로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인건비 및 기타	100% (굴착복구 관련 사업에만 기금 사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

- 2021년 기금사업 내용은 굴착도로 복구,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 정비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	
	'20년	-	
	'21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로굴착복구사업	1,211백만원	당해 연도 유관기관의 도로굴착공사 신청 시 징수되는 기금으로, 굴착도로를 신속히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에 100%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규모가 달라지는 특수성(신축적 집행 등)이 있어, 일반예산으로 편성·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복·유사 사업현황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중복·유사 사업현황	없음	
타 기금	중복·유사 사업현황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도로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는 도로 굴착복구기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 1,068백만원
 - 이자수입 : 36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2,838백만원
- 최근 3년간 기금운용현황 :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굴착되는 도로를 적기에 복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금으로, 향후 수시로 진행되는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유지, 운영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315	%	4,041	%	3,94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08	51.52	2,212	54.74	2,838	71.98
	예수금						
	이자수입	49	1.48	52	1.29	36.9	0.93
	기타수입	1,558	47.00	1,777	43.97	1,068.1	27.09
지 출	합 계	3,315	%	4,041	%	3,943	%
	비용자성사업비	1,103	33.27	1,203	29.77	1,217	30.8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12	66.73	2,838	70.23	2,726	69.1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11.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보건위생과)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1조
- 설치 목적: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목적
- 설치 년도: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29	194	78	116	645	447	392	5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사용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 용자·지원으로 2020년도 100,000천원(2개소) 지출되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용자 신청한 업소가 없어 집행실적이 없음.
-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비용자성 사업이 축소되어 기금의 지출보다 수입의 규모가 확대된바 지출의 완급조절을 통한 사업 추진 등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용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식품위생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u>'20년도</u>			<u>'21년도</u>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8	231	59.54	392	68	17.3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u>'20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용자(2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34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37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9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용자(1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23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14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7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19백만원) 	59.54
<u>'21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용자(2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24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38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9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용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19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20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2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6백만원) 	17.3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음식점 나트륨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용자 사업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1조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식품위생관련 교육·홍보, 음식점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지원 등	적정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 업소 위생컨설팅 실시, 먹을 만큼 적당하게, 좋은 식단 실천 등 위생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잘 추진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예방사업, 모범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과 식중독 예방 등 국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들로 기금설치 목적과 적합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00백만원	탄력적, 신축성 운용이 어려우며, 경기불황 등으로 시설개수를 원하는 업소가 적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예상.	상
② 음식문화 개선	37백만원	목적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중
③ 우수·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	38백만원	“	중
④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95백만원	“	중
⑤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홍보	22백만원	“	중
합 계	39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구분	재원의 성격	규 모		
		2019년	2020년	2021년
과징금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시 40%, 구 60%)	· 75,036천원 (34.9%)	· 65,753천원 (19.1%)	· 47,075천원 (24.2%)
시비 보조금	· 음식문화개선사업 서울시 교부금 등 · 시 교부금은 기금 계획변경 편성 사용	· 10,000천원 (4.7%)	· 10,000천원 (2.9%)	· 13,000천원 (6.7%)
기금운용 수익금	· 예금 이자수입	· 12,219천원 (5.7%)	· 3,931천원 (1.1%)	· 9,614천원 (4.9%)
	· 기타 이자수입 · 융자금 회수금 (이자포함)	· 117,660천원 (54.7%)	· 265,316천원 (76.9%)	· 124,787천원 (64.2%)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수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업소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부분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과징금 납부 대신 영업정지 수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2019년 75,036천원, 2020년 65,752천원, 2021년 47,075천원으로 지속적인 재원 감소 추세를 보임.
- 비용자성 사업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출 및 융자 사업 중심으로의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85	%	761	%	724	%
	전입금						
	보조금	10	1.3	10	1.3	13	1.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18	15.0	265	34.8	125	17.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70	72.6	416	54.7	529	73.0
	예수금						
	이자수입	12	1.5	4	0.5	10	1.4
	기타수입	75	9.6	66	8.7	47	6.5
지 출	합 계	785	%	761	%	724	%
	비용자성사업비	189	24.1	131	17.3	68	9.4
	융자성사업비	180	22.9	100	13.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16	53.0	530	69.6	646	8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2	0			10	1.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12. 광진구장학기금

아동청년과

광진구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아동청년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광진장학회 설립 : 1996. 10. 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제정 : 2005. 11. 17.
- 광진구 장학위원회 구성 : 2006. 02. 14.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2012. 11. 28.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2017. 09. 22.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2019. 10. 14.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2020. 10. 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358	66	86	△20	4,337	1,107	85	1,022	

II. 분석결과

1. 총 평

-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말 현재 4,337,827천원의 장학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1년 기탁금 23,000천원 조성 등 점진적인 장학기금 확대를 추진 중임
-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장학생 53명에게 86,500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음
-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으로(2.54% →1.93%), 장학재원 확보에 애로 사항이 존재하나, 지속적인 기탁과 출연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 가능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84	105	70	86	122.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광진구 장학금 지원 (80백만원, 54명)	○ 광진구 장학금 지원 (84백만원, 54명)	105%
'21년	○ 광진구 장학금 지원 (70백만원, 52명)	○ 광진구 장학금 지원 (86백만원, 53명)	122.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속적인 기탁과 출연으로, 장학기금 조성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의 기화(균등과 학력신장 도모)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약 111%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 기탁금에 대하여, 징수결의를 실시할 것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진구 장학사업	85,000천원	장학기금은 당초 민간 기탁금으로 조성·운영되어 왔으며,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와 별도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가 존재함 지속적인 출연과 기탁으로 장학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음에 따라 기금으로 운영함이 타당함	상
합 계	85,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장학금 지급	86,500천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구출연금, 기탁금, 예금이자수입, 기타*

* 분구시 성동구와 분할금, 초창기 회원의 후원금 등

- 예치금은 구출연금과 기탁금으로 조성되며, 이자수입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4,337,827천원으로 구금고인 국민은행에 전액 예금되어 있으며, 회계절차에 맞게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13개구의 장학기금 총액 대비 기금사용액을 우리구 비율과 비교한 바, 13개구의 평균과 같은 사용비율로 당초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내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탁금과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장학기금은 존치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381	%	4,442	%	4,424	%
	전입금			1,000	22.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275	96.8	3,324	74.8	4,358	98.5
	예수금						
	이자수입	78	2.3	75	1.7	43	1
	기타수입	28	0.9	43	1	23	0.5
지 출	합 계	3,381	%	4,442	%	4,424	%
	비용자성사업비	57	1.7	84	1.9	86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24	98.3	4,358	98.1	4,338	9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